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54424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10.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5.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18,888,88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D 주식회사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최종 양수한 채권자이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40603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C)는 원고에게 11,802,756원 및 그 중 8,476,282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C의 모친이자 E의 배우자이다.

2) E가 2021. 5. 5. 사망하자 C, F, G 등 3명의 자녀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졌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1. 6. 29. 접수 제33184호로 2021. 5.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는 C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원고 등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E와 혼인한 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E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E의 사망 후 C을 비롯한 자녀들은 당연히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게 된 것이고, C은 2007. 8.경부터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다가 2023. 2.경에야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은 C의 채무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현행 민법상 부부 공동형성 재산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부부의 이혼시에만 인정되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시에는 이를 인정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증가시키거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이혼 시와 같이 부부 일방의 실질적인 재산분할 권리를 인정해주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하여 이루어져 왔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데,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위와 같이 입법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배우자에게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자로서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 지원해 온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을 담아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을 인정해주고,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 등 복합적인 의미를 함께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망인과 피고는 적어도 1972. 이전경¹⁾ 혼인하여 2021. 5. 5.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50년간 가정을 이루고 혼인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996. 10. 1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96. 10. 2.경 망인 및 C을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약 28년간 거주하여 온 점,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C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점, C은 2007. 8.경부터 집을 떠나 거제시, 김해시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23. 2. 20.경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기도 하였고, 2023. 2. 28.경에야 비로소 피고의 자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전입신고를 마친 점, 달리 피고가 C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의 자녀들은 가정공동체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수십 년간의 피고의 노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효연

별지

1) 정확한 혼인일자는 알 수 없으나 망인과 피고의 아들인 C의 생년월일이 H일자인 점에 비추어 이를

알 수 있다.